

협회 소식

협회 업무활동

▣ 제6기 공정거래 전문연수과정 실시계획

- 개 요 : 공정거래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 및 공정거래전문가 양성과 아울러 법위반 행위의 사전예방 및 민간업계의 자율준수분위기 확산에 기여
- 일 자 : 12월 10일(수) ~ 12월 12일(금)
- 장 소 : 연세빌딩 24층 국제회의실(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 연수대상 :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업무 담당 실무책임자 등 총 40명内外
- 참가신청 : 2003년 11월 28일(금)까지
- 연수구성 : ·연수구성 - 공정거래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법체계 및 주요내용, 심결 사례 해설 및 토의
·강의주제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11개 주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해외연수 실시



준수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업계의 이해제고 및 벤치마킹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동 연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연구원, LG그룹, 삼성그룹, SK그룹, 한국통신, 현대자동차그룹, 용진코웨이개발 등의 임직원 20명이 참석하였다.

본 협회는 회원사 공정거래담당 임직원과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호주의 ACCC(호주 소비자경쟁위원회), ACI(호주 자율준수전문가협회), AEEMA(호주 전기전자제조업자협회) 등을 방문하여 공정거래 자율 준수 정책과 CP(Compliance Program) 운영상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동 해외연수는 2001년도 7월에 제정 권고된 우리의 공정거래 자율

1. 호주의 CP 현황

- 1) 호주의 CP는 경쟁법 분야뿐만이 아니라 금융, 환경, 보건, 복지, 노동, 고용, 성희롱, 성차별 등 모든 기업 경영요소와 관련된 광범위한 개념이다.
 - 따라서 기업마다 이러한 분야를 총 맡아하는 CP가 존재하며,
 - CP를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로 인식(부국장은 CP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문화(풍토)조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2) 호주 경쟁당국의 CP 전략부서(Compliance Strategies Division)에는 약 60~70명의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할 만큼 CP가 중요한 경쟁당국의 업무 중의 하나이다.
 - 부국장의 말에 의하면 호주 경쟁당국은 CP를 보고 있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호주의 경쟁법에 준해서 CP를 도입토록 하고 있는데, CP의 3가지 주요목적으로 ① 위법에 따른 법위반 방지, ② 회사의 문화조성에 도움, ③ 책임감있는 회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호주는 CP를 단순히 하나의 제도가 아닌 기업문화로 이해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 3) 호주 경쟁당국이 최근 3~4년 동안 내린 시정조치의 70%(약 400건 정도)가 CP 도입 명령이다.
 - 부국장은 CP 도입명령을 기업이 받아들일 것이냐의 여부는 기업의 재량이기 때문에 CP 도입명령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소되어 상당한 액수의 제재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CP 도입명령을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강제성을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 4) 호주 경쟁당국으로부터 CP 도입명령을 받은 기업체는 3년간 매년 경쟁당국에 감사보고를 해야 한다.
 - 경쟁당국은 이 감사보고를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기업에 명령한다.
- 5) 경쟁당국은 CP를 지원하기 위해 CP 관련 책자발행, 세미나 교육, 협회들과 미팅, 토의 진행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부국장은 기업체의 강의요청에 언제나 응할 수는 없어 전화문의에 따른 대응이 많다고 언급(홈페이지 사이트에 있는 C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라고 언급 : 호주의 경우 CP가 하나의 Content로 이루어져 있음)하였다.
- 6) 부국장은 CP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 이사회에서 CP 도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사회에서 CP의 중요성을 임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이사회에서 이슈화(issue)하여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②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입사 초기의 신입사원 교육이 중요하며, 기존사원의 경우는 6~12개월 단위로 교육하고 반드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식을 습득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③ CP 운영에 관한 내외부적 감사를 12개월에 한번씩 받고 CP 유용성에 대한 재평가는 2년에 한번씩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질의/응답

- ▶ 질의 CP를 경쟁당국에서 평가하는가?
- ▶ 응답 경쟁당국에서는 CP 평가를 하지 않는다. 기업에서 외부전문가(법률가나 전문가협회)를 통해 설계된 CP를 경쟁당국에 보고하면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고 기업의 수정작업을 통해 CP가 완성된다. CP 평가는 독립적 외부감사가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경쟁당국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경쟁당국에 의해 CP 도입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절차상 강제적으로 외부감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독립적 외부감사기관으로는 변호사, 컨설턴트기관, CP 전문가협회 등이 있다.
 - 현재 감사보고가 일정한 형태없이 천방지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당국이 감사기준을 마련중에 있다(내년말에 완료예정).
- ▶ 질의 CP에 대한 인센티브
- ▶ 응답 ① CP는 기업으로 하여금 법위반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며, ② 법원에서 정상 짐작의 요소가 되는 장점이 있다.
- ▶ 질의 CP 평가시 어떠한 지표들을 참고할 수 있는가?
- ▶ 응답 ① 문화조성을 위한 CP가 구축되어 있는지, ② 문제점 지적시 이러한 문제점이나 법위반이 줄어드는 경우, ③ 임직원들이 CP를 자각하고 있으며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④ 임직원들의 CP에 준한 자기업무의 인식여부, ⑤ 임직원들의 법률준수의 중요성 인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 질의 현재 호주 기업의 CP 도입현황은?
- ▶ 응답 호주 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 500개 중 60%정도가 CP를 도입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 호주 CP의 특징

- 1) 자율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법집행
- 2) 자율준수에 대한 폭넓은 경쟁당국의 관심과 CP 보급을 위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 경주
- 3) 기업 및 CP 전문기관과의 정기적인 협력 및 미팅
- 4) 기업체의 CP에 대한 전문적인 코멘트 실시
- 5) 기업체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기준(표준)들의 마련에 앞장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1) 법위반 업체에게 자율준수제도 도입을 명령하여 자율시정 및 재발방지 기회를 부여하는 법집행 방식 검토(2003. 7. 건의)

- * 일본의 개정 경품고시법(본지 「조사자료(42면)」 참고)
- 2) 경쟁당국내의 CP 부서 설치 및 CP 전문가 육성 필요
 - 3) 기업체와의 정기적인 미팅의 상설화 및 네트워크 구축
 - 4) CP 평가에 대한 지표개발로 CP의 정착화 유도 필요

본 협회, 고등학생 대상 공정거래교육 실시

한국공정거래협회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청소년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11월 25일과 26일 이틀간 경기상업고등학교 및 선린인터넷고등학교 3학년 학생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원리와 공정거래제도 및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래 시장경제의 주체가 될 학생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교육은 2교시로 나누어 제1교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유증곤 사무관이 시장경제원리와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제도의 개요에 대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제2교시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문화팀의 백승실 팀장이 전자 상거래 및 다단계·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의 피해사례와 대처방안에 대해 실제 피해사례 위주로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향후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세미나 실시

한국공정거래협회(www.kfta.org)는 11월 28일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담당 임원 50명을 대상으로 연세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및 자율적인 경쟁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이병주 정책국장의 「CP도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의 「국내 CP와 외국 CP의 장·단점 비교분석 및 개선방향」,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과장의 「CP 이행평가기준(안)의 주요내용/해외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현황과 대처방안」에 관한 강

의가 진행되어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 및 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CP의 평가기준과 정책방향 및 국내외의 CP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23차 조정회의 개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협회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김 용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10월 31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사안과 그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조정종료(취하)

▶ 한국하론공업(주) 등 10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

- 하도급분쟁조정회의의 중재로 양당사자간 합의후 신고인들의 신고취하로 제출로 조정절차를 종료함.

▣ 조정불성립

▶ 레전드건설산업(주) 등 4개 업체에 대한 분쟁건

- 피신고인의 대금지급여력부족, 피신고인 임원의 인장도용으로 인한 수사절차의 진행, 신고인의 과다청구, 양당사자의 근거자료 부족으로 인한 사실판단의 불가 등의 사유로 조정이 불성립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이첩

▣ 사건처리현황(2003. 1. 1~2003. 11. 6)

구 분	계	조정불성립	신고취하	불개시
제 조	36	6	27	3
건 설	50	11	35	4
계	86	17	62	7

▣ 제24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 개최예정

- 일시 : 2003. 11. 27.(목) 14:00
- 장소 : 공정거래협회내 분쟁조정회의실
- 안건 : 신고취하 10건 등 총 10건